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공고 제 2026-118호

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1. 채용내용

업무명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모집인원
정부양곡 도정수율시험 보조	정부양곡 도정수율시험 보조	. 도정수율시험 보조 . 시료 분류 및 정리 등 . 양곡연구동 정리 . 기타 업무 보조	김천시	2명
농산물 품위계측 및 규격자료조사 보조	농산물 품위계측 및 규격자료조사 보조	. 벼, 현미, 쌀 품위계측 . 수입 농산물 검사 보조 . 농산물 시료 규격 계측 . 과일품질표시 기준마련 자료 조사 . 기타 업무 보조	김천시	2명

2. 채용요건

❑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인접 시·군* 포함) 거주자

* 다만, 인접 시·군 거주자는 출퇴근, 직무수행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

❑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농업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경력자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농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산점 부여기준**

항 목	내 용	가산점	비 고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자	서류 및 면접 심사 평균 점수 + 만점의 10퍼센트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를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자	서류 및 면접 심사 평균 점수 + 만점의 5퍼센트	
장 애 인	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서류 및 면접 심사 평균 점수 + 만점의 5퍼센트	
저소득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면접심사 평균 점수 + 만점의 5퍼센트	
다 자 녀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면접심사 평균 점수 + 만점의 3퍼센트	

3. 근무조건 등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정부양곡 도정수율시험 보조: 2026. 12. 1.(화) ~ 2027. 3. 31.(수)**
- **농산물 품위계측 및 규격자료조사 보조: 2026. 12. 1.(화) ~ 2027. 8. 20.(금)**

* 채용 기간과 출근일은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보수: 일급 82,560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장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4.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예정

○ 서류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새소식] - [채용] - [공지사항] - [채용정보]: 서류 합격자(면접대상자) 공고

❏ **면접심사: 2026. 11. 26.(목)**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7.(금)** 예정

○ 최종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새소식] - [채용] - [공지사항] - [채용정보]: 최종 합격자 개제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1. 17.(화) ~ 11. 23.(월) 18:00 마감

❏ 접수방법: 우편, 직접방문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이며,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담당자(☏ 054-429-7724)

6.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7부) **<접수기간 내 한부라도 누락 시 서류심사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등 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된 등본)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우대조건 해당자 증빙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면접심사 당일 지참 요망]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본 1부

*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또는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담당자 (☎ 054-429-7724)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응시분야 :	※ 접수번호 :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주 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경력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1.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지역: 공고문의 "1. 채용내용"의 '채용분야'에 있는 00분야 및 근무 예정지역 기재

예시> 응시분야, 지역: 00분야, 00지역

② 주　　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경　　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명을 기재

⑤ 우대사항: 농업관련 학력 등 우대 관련 사항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20 . . .

작성자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2장 이내로 기술하되,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관련분야 활동·업적 등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품질조사과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이에 따라 정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는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여 □, 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여 □, 부□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 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 □, 부□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 □, 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 □, 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여 □, 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20 년 월 일

지 원 자 ㊞

[별지 제6호 서식]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작성용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2018. 11.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2019. 12. 13.)』**을 시달하여 채용비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채용에** 지원 시 지원자의 **친·인척**이 우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친·인척의 재직 여부 ----------있음 □ 없음 □ ※ 친·인척과의 관계(있음 체크한 경우) : 촌
* 친·인척 인적사항(있을 경우 작성)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근무부서 : 라. 직 위 : ※ 근로자는 해당되는 친·인척에게 별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를 징구하여 본 서류와 함께 제출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은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시 채용기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되며,**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정보는 면접위원 제척·기피, 채용비리 방지·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심사 자료로는 쓰이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채용기관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만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함께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친 · 인척용)

본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채용기관'이라 함)의 채용 모집에 지원한 000의 친·인척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기관이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친·인척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직장전화 ▪ 부 서

▪ 직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채용기관) : 채용 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제 운영, 채용비리 여부 조사

*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채용기관, 제3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필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직장전화, 부서, 직위---동의□ 비동의□

– 상기 동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불합격자의 친·인척)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파기할 때까지 보관

– (합격자의 친·인척) 노무관리자료로 보존(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인척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응시 원서 접수 제한 및 계약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